

제 2019-BO-0377 호



(앞쪽)

# 안전인증서

## CMP Products

Unit 36 Nelson Way Nelson Park East, Cramlington NE23 1WH U.K

위 사업장에서 제조하는 아래의 품목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4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 심사 결과 안전·보건 기준에 적합하므로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인증합니다.

### 품 목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Cable Gland)

### 형식·모델/용량·등급/인증번호

형식·모델  
TE1FU(2" 초과 4" 이하)

인증번호  
19-AV4BO-0377X

용량·등급  
Ex d IIC, Ex e IIC, Ex nR IIC, Ex tD A20 IP66  
Standard Seal:  $-60\text{ }^{\circ}\text{C} \leq T_{amb} \leq +130\text{ }^{\circ}\text{C}$   
High Temperature Seal:  $-20\text{ }^{\circ}\text{C}$  to  $+200\text{ }^{\circ}\text{C}$

### 인 증 기 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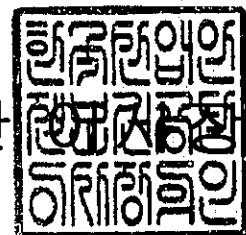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9-15호)

### 인 증 조 건

(뒤쪽)참조

2019년 08월 12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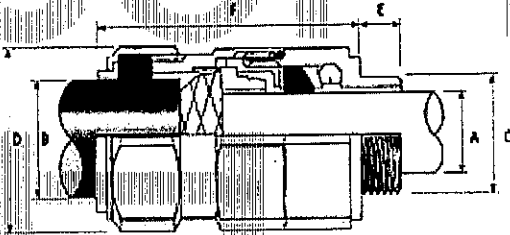
# 인 증 조 건

1. 제조공장: "Unit 36 Nelson Way Nelson Park East, Cramlington NE23 1WH, U.K"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한함.

## 2. 제품개요

본 Cable Gland는 탄성중합체 밀봉 링으로 외장 케이블을 밀봉하는 기기로 폭발성 가스 증기분위기가 존재하는 1층 또는 2층 장소, 폭발성 분진 분위기가 존재하는 20층, 21층 또는 22층에서 사용할 수 있음.

3. 인증범위: 본 기기의 동일형식 인정범위는 아래와 같음



- 재질: Stainless Steel

Cable Gland Size	Entry Threads																'A'		'B'	
	Metric				NPT				BSPP				BSPT				Min	Max	Min	Max
	'C'	'E'	'C' (사양 B)	'E' (사양 B)	'C'	'E'	'C' (사양 B)	'E' (사양 B)	'C'	'E'	'C' (사양 B)	'E' (사양 B)	'C'	'E'	'C' (사양 B)	'E' (사양 B)				
75S	M75	15.0	M90	24.0	2-1/2"	39.9	3"	41.5	2-1/2"	15.0	3"	24.0	2-1/2"	36.0	3"	39.1	52.8	62.0	59.0	72.1
75	M75	15.0	M90	24.0	2-1/2"	39.9	3"	41.5	2-1/2"	15.0	3"	24.0	2-1/2"	36.0	3"	39.1	59.1	68.0	66.7	78.5
90	M90	24.0	M100	24.0	3"	41.5	3-1/2"	42.8	3"	24.0	3-1/2"	24.0	3"	39.1	3-1/2"	43.0	66.6	80.0	76.2	90.4
100	M100	24.0	M115	24.0	3-1/2"	42.8	4"	44.0	3-1/2"	24.0	4"	24.0	3-1/2"	43.0	4"	46.2	76.0	91.0	86.1	101.5
115	M115	24.0	M130	24.0	4"	44.0	5"	46.8	4"	24.0	5"	24.0	4"	46.2	5"	51.7	86.0	98.0	101.5	110.3

## 4. 안전한 사용을 위한 조건

- 설치 및 유지보수 시 사용자가 제공한 사용설명서(문서번호: FI463\_KR, issue 0)를 참조할 것.
- 케이블 글랜드의 인입부 크기가 공칭 치수보다 한 단계 큰 치수가 제공되면 글랜드 사이즈 다음에 'B' 글자로 표시(글랜드 사양"B")되며 어댑터와 같이 사용할 수 없음.
- 플렉시블 전선관에 조립 시, 전선관은 당김 혹은 비틀림에 보호되도록 효과적으로 고정할 것.

## 5. 인증(변경)사항

- 해당없음

## 6. 그 밖의 사항

- 제조자는 안전인증품의 품질관리, 확인심사 수검, 변경사항 신고 등 인증 받는 자의 의무를 준수할 것.